

☎044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8층[http://www.kma.org]/전화(02)6350-6533 / 전송(02)796-4487
정책국 국장 최윤배[6530] 정책팀장 박우민[6532] 주임 이정화[6533] /jhpure@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25- 885호

시행일자 2018. 3. 12.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202호(2018. 3. 9.)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하여 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내용과 교육 협조기관을 지정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약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을 신설함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 공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자료. 끝.

대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각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